

행정고시반 운영내규('25.3.1.)

제 1조 (목적) 이 내규는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높은 윤리의식과 탁월한 정책의사 결정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하는 행정고시반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선발방법) 행정고시반 실원은 다음과 같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① 5급 공채 1차 시험 응시 경험 있는 자는 증빙서류를 확인 후 선발한다.
- ② 학교에서 실시하는 PSAT 모의고사 응시 여부를 확인 후 선발한다.
- ③ 고시반 지도교수가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는 PSAT 성적 없이 선발할 수 있다. 단, PSAT 성적 없이 입실한 자는 1년 내에 점수를 제출해야 한다.

제 3조 (입실원서 작성)

행정고시반 입실을 희망하는 경우, 입실원서를 작성해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 4조 (입실자 의무) 고시반에 입실한 자는 아래와 같은 행동의무를 갖는다.

- ① 고시반 제공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.
- ②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고시반에 일정기간 출석하지 못하는 자는 [별첨 2]의 휴실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, 그 기간 동안에는 출석을 유예한다.

제 5조 (운영) 고시반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1인의 실장을 두며, 실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.

- ① 도서 구입 및 학습자료 신청에 관한 사항
- ② 비품 구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
- ③ 기타 고시반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 6조 (지원금) 실원들의 학습의욕 고취 및 합격률 제고를 위해 예산의 한도 내에서 포상금 및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① 5급 공채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
- ② 5급 공채 1차 시험에 합격한 자
- ③ 교내 PSAT 모의고사 성적 우수자
- ④ 고시반 운영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

제 7조 (탈퇴) 고시반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[별첨 3]의 퇴실원서를 작성해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①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고시반 지도교수와 상담 후 고시반을 탈퇴한다.

가. 비윤리적 행위 적발자

나. 입실 후 3년 동안 성적 상승이 없는 자

다. 졸업 후 3년 동안 행정고시 1차에 합격하지 못한 자

② 지도교수가 고시반 생활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강제 탈퇴 될 수 있다.

제 8조 (행정지원)

고시반 행정지원은 사회과학대학 행정실에서 담당한다.

제 9조 (기타)

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반 지도교수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첨 3]

행정고시반 퇴실원서	
성 명	
연 락 처	
학 번	
퇴 실 사 유	
<p>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탈퇴를 희망하여 퇴실원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>202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 청 자 : (인)</p>	